의안번호	제 504 호
의 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
발의연월일	2020년 8월 26일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(김국기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 504

발의연월일 : 2020년 8월 26일

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

찬 성 자 : 박성원, 최경천, 김영주,

심기보, 이수완, 임동현 의원

1. 제안 이유

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근 거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라. 1회용품 사용 제한(안 제5조)
- 마.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바.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・홍보(안 제7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아. 시행규칙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66호 (2020. 8. 20. ~ 2020. 8. 24.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행정기관"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.
- 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3. "1회용품"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4. "생분해성수지제품"이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, 교직원 대상 교육 연수
- 3.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홍보
- 4. 유관 기관과의 협력
- 5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1회용품 사용 제한)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 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할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·홍보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, 교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5. 27.] [법률 제16611호, 2019. 11. 2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

- 15. "1회용품"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6. "생분해성수지제품"이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(環境標識)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.
-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 8. 13.〉
 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 - 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 - 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 -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 - 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 - 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 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〈신설 2013. 8. 13.〉
 - 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
 - 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
- 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. 〈신설 2013. 8. 13.〉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제10조의2(1회용 봉투 · 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)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

- ·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8. 13.〉
- 1.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·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
- 2.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
- 3. 장바구니의 제작·보급
- 4.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
- 5. 전년도의 1회용 봉투·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
- 6.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[본조신설 2007. 5. 11.]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0. 5. 27.] [대통령령 제30618호, 2020. 4. 14., 일부개정]

제5조(1회용품) 법 제2조 제1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6.]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09.4.6> 1회용품(제5조 관련)
- 1. 1회용 컵 · 접시 · 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

한다)

- 2. 1회용 나무젓가락
- 3.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- 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- 5.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 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- 6. 1회용 면도기 · 칫솔
- 7.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
- 8.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 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9.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 석 등을 말한다)
- 10.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0. 5. 27.] [환경부령 제869호, 2020. 5. 27., 일부개정]

- 제3조의2(생분해성수지제품)법 제2조 제16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 〈개정 2011. 10. 28., 2013. 3. 23.〉
 - 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
 - 2.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하는 시험기 관으로부터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인정받은 제품

[전문개정 2009. 4. 7.]

- 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(약칭: 환경기술산업법) [시행 2020. 3. 31.] [법률 제17183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-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있다. 〈개정 2014. 3. 24.〉
 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[제20조에서 이동 〈2008. 3. 21.〉]

□ 초・중등교육법

[시행 2019. 12. 3.] [법률 제16672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
- 2. 중학교・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0. 3. 1.] [법률 제16875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 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〉

- 1. "유아"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- 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 되는 학교를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

4. 작성자: 행정국 총무과장 박승렬